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역도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역도연맹(이하 “연맹”라 한다.)는 「경기도역도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사업별 지침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회계처리가 신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제15조(계약의 체결) 제3항¹⁾에 의거,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1)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제40의 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 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회계처리 절차를 위해 품의서, 결의서를 실시하고 있으나 1건의 품의서와 결의서로 사업(대회) 전체 지출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2023 경기도의장배 역도대회’를 개최하면서 [표1]과 같이 현수막, 음향장비, 심판판정기, 티셔츠 등을 지출하면서 계약을 실행하지 않고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표1] 2023 경기도의장배 역도대회 계약 미이행 현황

년도	사 업 명	금액(원)	지출내역	업체명
2023	*****	*, ***, 000	현수막	필*****
		*, ***, 000	음향장비	J*****
		*, ***, 000	심판판정기	케*****
		*, ***, 000	티셔츠	크*****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증을 비롯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표2]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2]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현황

년도	사 업 명	금액(원)	지출내역	업체명
2022	*****	***, 000	보험료	스*****
2023	***** *	*, ***, 000	심판판정기	케*****
2023	***** **	***, 000	테이핑	오*****

[조 치 사 항]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1~23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지출증빙을 전면 검토하여 부족한 서류의 보강을 실시하고 위 지적된 서류를 보강하여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전자문서시스템 미사용

[소 속 기 관] 경기도역도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역도연맹(이하 “연맹”라 한다.)는 「경기도역도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²⁾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예산지원도 함께 진행하여 연맹의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10)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내·외부 문서의 관리를 ‘문서24’를 통해 관리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자체비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기록화 하고 있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문서의 목록과 내부결재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해지며, 각종 첨부자료 등이 자동 삭제되어 이전 사업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불가능해짐에 따라 제대로된 전자적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국도비 및 자체비는 PC와 서면을 통해 보관하고 있으나 분실 및 훼손, 저장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전자적 기록화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동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은

연맹의 사무국이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해있는 만큼 본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2024년 하반기(8월)부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록물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기타규정 제정 필요

[소 속 기 관] 경기도역도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역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역도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르면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사무국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맹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맹은 기본규정(규약)만 제·개정된 상태로 세부 규정이 없어 인사 및 복무, 회계처리, 회장 출연금 관리 등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해 기타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은

「규약」,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대한역도연맹 「기타규정」 등을 준용하여 회계규정, 인사 및 복무 규정 등을 종목 특성 및 여건에 맞춰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연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된 기타규정을 본회 공정감사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역도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역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경기도역도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약 제4조의 각종사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그 구성 등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규약」 제37조 부터 제39조의2 조항을 두어 각종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규약」 제37조는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절차 및 그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동 규약 제39조의 2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제척 및 회피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동 조항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그 위원의 심의·의결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 연맹 사업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에 비추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로 「규약」 제38조 및 20**년 연맹에서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 및 그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연맹은 「규약」 제37조 제6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2의 조항을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본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연맹은 현재 2개(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규약」 및 관련 제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연맹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년 *월 제**차 이사회를 통하여 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을 구성하였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위원 모두 現 연맹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 현황

순	직책	위원명	임원직위	비고
1	위원장	윤00	경기도역도연맹 부회장	
2	부위원장	허00	경기도역도연맹 이사	
3	위원	강00, 김00, 안00, 이00, 차00	경기도역도연맹 이사	

각종 위원회의 경우 「규약」 제37조 제1항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 제1항¹⁾,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²⁾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봄이 타당하나, 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경우 전원 연맹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 취지인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과 연맹 사업의 투명성 제고 저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연맹 「규약」 제39조의 2와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11조에서는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원 연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이사회 임원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종목단체 임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심의의결사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의 참여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 내용 상이

연맹은 「규약」 제38조 제2항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을 각 호를 통하여 명시하였으나, 그 자격 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
- 1)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도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2)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표2] 연맹 「규약」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위원자격

「규약」 제38조 제2항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 제3항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종사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좌동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시 서로 상충되는 자격조건으로 인한 혼란 초래 및 의결사항에 대한 절차상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향후 자격조건 등에 대한 각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다. 각종 위원회 개최 정상화 방안 마련

연맹은 「규약」 제37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수감범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의 경우 연맹의 각종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할 것이나, 최근 3년간 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위원회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향후 연맹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은

연맹의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설치된 각 위원회의 올바른 기능 수행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맹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연맹 차원의 각 위원회 적극 활용방안 또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임직원 수당 지급

[소 속 기 관] 경기도역도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역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수당(인건비)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강사비의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직원에게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국도비를 보조받은 대회에서 임직원을 심판, 진행요원, 운영요원 등으로 배정하고 과업을 맡긴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에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는 지급으로

강사비의 경우 강사비 지급기준을 따라 지급하되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수당의 성격이 심판의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역도연맹에 심판 요청을 통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요청을 하지않고 내부 임직원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은

국도비를 보조 받아 대회를 개최할때에는 보조금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을 운영할 시 이를 잘 반영하여 운영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